

2021년도 2/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2021. 9. .

감사위원회

1.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 및 공사관리실태 - 3불(不) 대책 이행 분야 -

□ 감사배경 및 목적

-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의 분야별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시(2), 투자기관(3), 자치구(3) 등 8개 기관*

대 상	기 관 명	대 상 공 사 장
서울시 (2)	도시기반시설본부	○○선(□호선연장) ○○○○○○○ 건설공사 등 16개소
	한강사업본부	□□□□공원 □□□□□ 복원사업 등 6개소
투자기관 (3)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지구 △△△ 건설공사 등 21개소
	서울교통공사	◎◎◎◎ □호선 ◎◎역 건설공사 등 33개소
	서울시설공단	2019년 ◇◇◇◇◇◇◇◇ 내진보강공사 등 24개소
자치구 (3)	성북구청	○○초교 앞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6개소
	종로구청	△△대로 보행환경개선공사 등 6개소
	송파구청	◎◎로 교통소통 개선공사 등 6개소

* 37개 기관(550개 사업) 서면조사(적정임금지급분야) 시행

- 감사기간 : 2020. 5. 14. ~ 7. 22.(2개반, 기간 중 각 40일)
- 감사인원 : 하도급감사팀장 등 5명
- 감사범위 : '17년 7월 이후 공사 발주하여 진행 중인 공사

□ 감사중점

- 건설업혁신 3불(적정임금,주계약자공동도급,사고이력관리 등)제도 이행 적정성
- 제도 개선 적정성, 적용여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총건수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9	-	-	- (-)	- (-)	- (-)	-	-	- (-)	-	-	2	6	- (-)	1 (-)

□ 총 평

1. 시, 투자기관 등이 '17. 7월 이후 준공 또는 '20년 현재 진행 중인 118개소 건설 공사장에 대한 『건설업 3불(不) 대책 - 근로자 불안, 하도급 불공정, 부실공사』 이행실태를 분석·검토한 결과,

□ 건설업 3불(不) 대책 주요내용인 ① 적정임금 지급분야(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② 하도급 불공정 분야(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직접시공 이행) ③ 건설공사 안전사고 분야(사고이력 관리) 등 '17년 7월 제도 전면 도입 이후 총괄(주관)부서(○○○○○과)의 운영실태 점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제도 정착은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나, 분야별 이행실태에 있어 일부 사항은 업무개선이 요구됨

① [예방단계] 적정임금 제도 분야

【입찰공고 단계】 ⇒ 입찰공고시 『적정임금 지급 의무대상 공고내용』 기재

구 분	공사장수	적용대상	입찰공고시 적정임금 기재유무		
			기재	미기재	준수율
감사결과	118	97	85	12 ¹⁾	87.6%

1) 사업소(미기재5/기재17), 투자기관(미기재2/기재55), 자치구(미기재5/기재13)임

【근로계약 단계】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 계약서 사용

구 분	공사장수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 계약서 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	준수율
감사결과	118	118	103	15 ¹⁾	87.3%

1) 사업소(미사용2/사용20), 투자기관(미사용12/사용66), 자치구(미사용1/사용17)임

② [대응단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분야

【공사착수 이전 단계】 ⇒ 사전협의절차 및 공중분리위원회 이행

구 분	공사장수	사전협의절차 적정이행여부				공중분리위원회 적정이행여부			
		적용대상	이행	미이행	이행률	적용대상	이행	미이행	이행률
감사결과	118	51	44	7 ¹⁾	86.30%	26	24	2 ²⁾	92.30%

1) 사업소(미이행0/이행6), 투자기관(미이행7/이행25), 자치구(미이행0/이행13)임

2) 사업소(미이행1/이행8), 투자기관(미이행1/이행12), 자치구(미이행0/이행4)임

【공사착수 이후 단계】 ⇒ 발주기관 및 시공회사 상생협력회의 운영

구 분	공사장수	적용대상	상생협력회의 이행여부		
			운영	미운영	이행률
감사결과	118	5	1	4 ¹⁾	20.0%

1) 사업소(미운영3/운영0), 투자기관(미운영0/운영1), 자치구(미운영1/운영0)임

③ [수습·복구단계] 사고이력관리 제도 분야

【사고발생 이전 단계】 ⇒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장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

구 분	공사장수	적용대상	전자인력관리제도 이행여부		
			사용	미사용	이행률
감사결과	118	12	10	2 ¹⁾	83.3%

1) 사업소(미사용1/사용4), 투자기관(미사용1/사용6)임

【중대재해 발생 단계】 ⇒ 중대재해 발생 사고 해당업체 재해관리 적정 이행

구 분	공사장수	적용대상	재해관리 적정 이행여부		
			적정	부적정	이행률
감사결과	118	3	0	3 ¹⁾	0.0%

1) 사업소(부적정3/적정0)임

2.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안)

① 적정임금 제도 분야

○ 입찰공고문에 “적정임금 지급 준수사항” 누락 및 미기재

- 발주부서는 “입찰공고문”에 “적정임금 지급 의무대상”이라는 점을 입찰 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기관별 서로 다른 문안을 적용 기재하고 있으며,
- 주관부서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부서 또는 발주부서간 업무처리에 이견이 있는 상태임

⇒ 적정임금 지급 의무대상 내용을 기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내부의 입찰공고문 검토 관련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공사관리관(계약담당자 등)에게 지도·교육 실시(통보)

○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및 기능공 직종 구분 소홀

- 발주부서는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직종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서 또는 노무비 명세서상의 직종과 실제 직종을 상이하게 표기하여 숙련도나 임금이 낮은 '보통인부'로 계약하는 등 적정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함

⇒ 서울시 발주공사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토록 의무 규정 신설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지도·교육 실시하고 '기능인등급제도'를 참조하여 제도 시행('21.05) 전 기능공 직종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안) 마련(통보, 권고)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분야

○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및 공종분리위원회 절차 미이행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종합·전문간 공정관계(수직→수평) 구축하여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또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거쳐 발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발주하였음

⇒ 재발방지를 위하여 2억~100억원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공사 발주 사업 사전검토' 또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공사관리관에게 지도·교육 실시(통보)

○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 운영 업무 소홀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임에도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간 이해관계 조정 및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할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를 개최하지 않음

⇒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여 진행 중인 모든 공사장에 대하여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를 실시하도록 공사관계자에게 지도·교육 실시(통보)

③ 사고이력관리 제도 분야

○ 건설근로자용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미설치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현장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 현장이 있음

⇒ 건설현장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에게 지도·교육 실시(통보)

○ 중대재해 발생 하도급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미개최

- 중대재해 발생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대상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등록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개최시기를 미루는 사례가 있음

⇒ 중대재해 발생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미개최 및 재해이력등록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제도의 미비점 개선방안 강구(통보)

3. 모범사례

○ “2019년 ○○○고가교 내진보강공사”의 (주)□□□건설(공동수급인 (주)◇◇◇◇◇◇), (주)○○엔지니어링은 건설현장에 이동식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현황 등 근태관리, 적정임금지급 등 관리·운영하고 있음

4. 조치계획

○ 권고(2건) - ◇◇◇◇실(△△△△과)

- ▶ 건설근로자의 직종 구분 기준 명확화(권고)
-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 규정 신설(권고)

○ 통보(6건)

- ▶ 입찰공고문상 적정임금 지급의무 관련 사항 미기재
-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 ▶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등 사전절차 미이행
- ▶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 운영 미흡
- ▶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미이행
- ▶ 중대재해 발생 하도급업체 검증위원회 미개최

5. 행정사항

○ 통보(1건) - ◇◇◇◇실(△△△△과)

- ▶ 「건설업혁신 3불 대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2. 상수도사업소 건설공사 관리실태

□ 감사배경 및 목적

-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수질오염 등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정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수도 노후 송·배수관 정비사업 및 수도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중부, 동부, 북부, 남부수도사업소
- 감사기간 : 2020. 10. 26. ~ 11. 27. (기간 중 25일)
- 감사인원 : 안전감사 3팀장 등 5명
- 감사범위 : '17.1.1. 이후 준공 또는 진행 중인 건설공사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송·배수관 정비사업의 집행절차, 시공, 정산 적정 여부
- 배수지 수질검사 및 청소, 염소분산 투입시설 운영관리 실태
- 상수도관 비굴착 공법 적용, 건설폐기물 처리의 적정 여부
- 상수도 공사 및 수도시설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23	27	15,862	0 (0)		1 (15,862)	1 (15,862)	0 (0)	0 (0)	10 (27)	1		11	0 (0)	0 (0)

□ 총 평

-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낭비, 품질·안전분야 전반에 걸쳐 공사 관리실태에 대해 2020.10.26.부터 2020.11.27.(25일간)까지 중부, 동부, 북부, 남부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음.
- 수도사업소에서는 서울시 최강한파에 대비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먹는 물 저장시설인 배수지는 해충 등 유입 방지시설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개선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노력을 하고 있었음.
- 이번 감사결과, 중부수도사업소 등 4개 기관은 ‘민간 대형건축물의 수돗물 저수조 수질관리 이행 등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총 10건의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음.
-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주의요구 및 통보 등 행정상 조치하였으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업무담당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 10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
- 현재 행정상 조치 10건 중 5건은 조치 및 개선 완료하였으며, 절차상 시간이 필요한 5건은 진행 사항을 관리하여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겠음.

3.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기관운영감사

감사배경 및 목적

-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기관 운영 및 추진사업 전반을 감사하여 공사의 설립목적인 농수산물 안전성·원활한 유통·적정가격 유지를 지원

감사 개요

- 감사대상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시 경제정책실(도시농업과)
- 감사기간 : 2020. 6. 9.(화) ~ 6. 29.(월) 기간 중 15일

구 분	예비 감사	본 감사
기 간	6. 9.(화) ~ 6. 17.(수), 7일	6.18.(목) ~ 6. 29.(월), 8일

- 감사범위 : 2017. 1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공공감사2팀장 등 6명 ※ 공익감사단(회계사 1명) 포함

감사 중점

- 농수산물 유통체계, 안전성 관리 및 시장 내 유통인 감독·지원 실태
- 도매시장 시설개선 및 시설물 관리·방역 등 안전실태
- 시설사용료, 임대료 등 공사 영업수익 관리 실태
- 조직관리·인사운영 적정성 및 예산·회계분야 운영 적정성

지적사항 총괄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¹⁾	신분상 조치인원 ²⁾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환 수	감 액	기 타						
9	11	0	0 (0)	0 (0)	1 (0)	0 (0)	0 (0)	1 (0)	5 (11)	0 0	0 0	2 0	0 (0)	1 (1)

1) 총건수는 처분요구 등의 유형별 조치한 모든 건수(모범사례 포함)
 2) 신분상 조치 인원은 징계, 주의, 고발과 관련한 인원을 말함(모범사례 인원 제외)

□ 총 평

- 이번 감사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주요 사업추진 현황 및 시설 운영, 조직·예산회계 등 공사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개선함으로써, 농수산물 안전성·원활한 유통·적정가격 유지의 공단설립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2020.6.9. 부터 6.29. 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감사 결과, 기관 운영상의 중대한 비위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 일부 농안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등 업무소홀, 물품관리 업무 전반 부적정, 공용부지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 등 관리소홀,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소홀, 가락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업무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 총 9건이 확인되었음
-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주의 요구 등 신분상 조치하였음
- 현재 행정상 조치 9건 중 8건은 조치 및 개선 완료되었고 시정이 필요한 1건은 조치 진행 중에 있으며, 신분상 처분 3건은 조치 완료되었음
-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담당자의 업무소홀,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 기인한 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각 시정·개선토록 하고 업무관련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4. 여성편의정책 추진실태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0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안심화장실 등 여성편의정책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여성 불편사항 개선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자치구(마포구, 성북구, 관악구, 강서구)
- 감사기간 : 2020. 5. 25. ~ 7. 13.(기간 중 36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7명
- 감사범위 : 2017. 1. 1.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 정책운영 전반

□ 감사중점

- 안심택배함 설치장소 적정성, 이용 편의성 및 보관함 안전성 여부
- 안심스카우트 대원관리 및 이용자 안전 적정 여부
- 공중화장실 여성안전시설, 안심보안관 인력, 장비, 점검주기 및 점검방법 적정성 여부
- 임신부휴게실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여부, 설치장소 적정성, 이용 편의성, 청결성 등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시정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조치 (인원)	재정상조치 (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부과, 환급신청)						
24	1 (1)		-		-	-	-	1	5 (1)	-	-	18	-	

※ 주의요구 인원 1명(주의 1), 통보18건 중 모범사례 1건 포함

□ 총 평

여성편의정책 운영실태에 대하여 2020.5.25.부터 7.13.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 시 및 자치구는 안심택배,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화장실 사업운영 및 임신부 휴게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 여성편의를 위한 정책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삶을 영유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 다만, 향후 여성편의를 위해 개선해야할 운영상에 문제점 등도 발견되었음
 - 안심택배 분야에서는
 - 접근성 및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택배함 설치위치 선정, 안내표지판 설치 부적정, 홍보부족 등 택배함 이용률 제고에 저해되는 요인이 발견되었으며
 - 택배함 운영용역 입찰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항목의 일부 중복, 운영면에서 과업지시서와 현장 간 상이점 등 문제점이 적출되었음
 - 안심귀가 스카우트 분야에서는
 -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동행 픽업 장소에서만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실제 위험요인이 있는 사각지대가 등한시 될 수 있으므로 활동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일부 구청에서는 안심귀가 스카우트대원 선발과정에서 채점상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되었음

○ **안심화장실 분야에서는**

- 서울시 여성안심망 주요정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경험이 매우 높으며(91.2%) 안심보안관제도에 대한 공감도가 84.5점, 안심보안관제도의 도움정도는 77.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2019년 11월 안심보안관사업이 일반고용과 연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되고 2020년 8월 사업 중단이 결정됨으로서, 불법촬영에 대한 우려가 높아 여성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벽면 칸막이 개선 사업이나 기 배부된 불법촬영 점검기기의 이용활성화 및 확대 배부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 화장실 벽면 칸막이 상·하부가 개방되어 있어 불법촬영범죄가 우려되므로 화장실 벽면설치 매뉴얼 개선 필요

○ **임산부휴게실 분야에서는**

- 유모차를 동반한 임산부가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임산부휴게실이 위치(전체 88개 중 12개)하거나, 임산부휴게실의 위치를 알려주는 유도안내판의 설치가 적정하지 않고 지하철 앱 및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등의 임산부휴게실 상세 이동경로 안내홍보가 미흡한 등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 임산부휴게실에 대한 보건복지부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대부분 임산부휴게실의 내부시설·물품이 불충분하거나 시설의 청결상태 미흡 및 임산부휴게실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 관리 실태가 지적됨

○ 기저귀교환대 분야에서는

-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기저귀 교환대 설치, 당초 설계 상에는 기저귀 매입함을 설치토록 하였으나 매입함 미설치 상태로 준공검사 실시하거나, 벨트.버클이 불량한 상태로 기저귀 교환대를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 소홀이 지적되었고
- 지하철 화장실 개량공사 시 건설기술인을 부적정(건축→토목) 배치하거나, 공사현장을 감독해야 할 건설기술인이의 현장이 탈 등 현장관리 소홀이 지적됨

○ 모범사례는

- 관악구청은 공공개방화장실에만 안심벨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추가로 민간개방화장실 중 범죄 발생 위험도가 높은 남녀공용 화장실 4개소 및 외진 곳에 위치한 화장실 2개소에 안심벨을 확대 설치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함은 물론,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하여 차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

➡ 감사결과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포상추천 및 대외 적극 홍보

5. 공공시설 소방설비 등 안전 장비용품 설치 및 관리실태

□ 감사배경 및 목적

- 지하철역사, 공공청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예방하고자 함.

□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 감사기간 : 2020. 12. 08. ~ 12. 17.(기간 중 8일 실시)
- 감사인원 : 안전감사1팀장 등 5명
- 감사범위 : 소방시설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실태 전반

□ 감사중점

- 소방시설 분야
 - 소화기 비치 및 소방호수 관리·작동 실태
 - 피난설비 설치기준 준수 및 비상조명등, 피난 유도등 관리·작동실태
 - 지하철역 시민 구호용품 관리 실태
- 자동심장충격기 분야
 -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패드 밀봉상태 여부
 - 보관방법 및 설치 위치 안내 적정 여부 등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총건수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정 (회수)	감액	기타						
21	-	-	-	-	10	-	-	10	-	-	1	10	-	-

□ 총 평

- 시민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사 20개역, 지하도상가 3개소, 체육시설 5개소, 문화시설 3개소 등) 소방시설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를 샘플 점검한 결과,
 - 기관별 소관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고, 총 21건의 지적사항이 적출되었음. (현지시정 14건 별도)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소화용수 공급 펌프실 관리 미흡, 소화전 배관 관리 미흡(동파방지 등)
 - 소화가스(이산화탄소 등) 누출 사고 대비 관리 소홀
 - 화재탐지기 미설치, 화재발생 경보기 고장난 상태로 방치
 - 비상 시 안전한 탈출을 돕는 유도등의 설치 및 관리 부적정 사례
 - 층간 방화구획 설치·관리 부적정
 - 방화셔터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등 비상 시 소화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부적정 설치
 - 자동심장충격기 분야에서는 패드 유효기간 경과, 잠금장치 미해제 등 50개소에서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었음.
- 상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점검이 샘플 점검임을 감안하여 기관별 소방시설·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 자체 전수 점검하여 개선토록 조치

6. SH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실태

□ 감사배경 및 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 및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상 문제점과 예산낭비 요인을 도출하고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 추진내용

- 대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 자산운용본부)
- 감사기간: 2020. 10. 14. ~ 11. 10.(기간 중 20일)
※ 예비감사: 10. 14. ~ 10. 20.(5일)
- 감사인원: 공공감사 3팀장 등 6명(공익감사단 1명 포함)
- 감사범위: 2017년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리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재개발) 관련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관리비 및 임대료 징수업무 등 임대아파트 운영관리 적정성
- 임대아파트 입주자 입주자격 적정성 점검
- 임대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 실태 적정성 확인

□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 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재시공	기타					
25	21	430,535	- (-)	1 (1)	6 (430,535)	1 (24,431)	- (-)	1 (4,763)	4 (401,341)	9 (20)	- -	- -	10	- (-)

□ 총 평

-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및 재개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실태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11. 10.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 SH공사는 11만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직영이나 위탁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 16개 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폐합 및 광역화('20년 16개단지)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 하고
 - 관리전산프로그램 개발, 주택관리업자 종합평가 시 고객만족도 평가비율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등으로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가능케 하였으며
 - 임대주택 주차장 나눔카 주차면수 공유 확대를 추진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홍보, 역량강화 교육,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임차인의 관리참여 확대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위와 같은 SH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잡수입을 규정과 달리 사용하거나, 장기체납자 방치, 공가를 임대 목적 외 사용, 거주실태 조사 미흡, 기준가액 초과 고가차량의 단지 내 주차를 제한하지 못해 비난을 받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 유지보수 공사 중 단가를 과다 산출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사비를 과다지급하고, 안전점검 업무가 소홀히 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 잘못 집행된 잡수입과 과다지급 된 공사비 회수를 요구하고, 잡수입을 규정 대로 사용하며, 고가차량 단지 내 주차 제한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장기 체납자 관리 및 거주실태 조사, 안전점검 및 공사관리 업무 등에 있어 문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SH공사에 문책 요구 등 조치하였음
 - 25건의 처분 사항 중 15건은 조치완료 되었으며 10건은 조치 중에 있음

- ③ 2020년 시행 정밀점검 용역 결과와 관련 지역센터에서 제출받은 보수계획이 정밀점검 결과에 맞춰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연 2회 시행하는 정기점검 시 정밀안전점검에서 지적된 결함이 계획대로 보수되었는지 점검토록 하며,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과 보수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 및 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는 등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 ④ 아울러, 정밀안전점검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고, 정밀안전점검 주관부서임에도 점검에 따른 보수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치없이 방치한 가부와, 정밀안전점검 보수 업무 등에 있어 12개 지역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3개 지역자산처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17조 [별표 1]에 따라 ‘부서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7.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 감사배경 및 목적

- 이번 감사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수급, 보조금 횡령, 이용자 학대 등 사회 이슈화로 시설의 투명성, 노인의 인권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설의 투명성·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

□ 추진내용

- 감사대상 : A시설, B시설

※ 지도·감독부서 : 市 인생이모작지원과, 市 어르신복지과
성북구(어르신복지과), 노원구(어르신복지과)

- 감사기간 : 2020.10.26.~11.27.(22일간)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7명(공익감사단 2명 포함)
- 감사범위 : 2017.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운영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조직 및 인사관리의 적정성
- 예산·회계·계약 업무 처리 적정성
- 시설관리 적정성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모금·진행 등 적정성
- 시·구 주관부서 지도·점검 실태 적정성

□ 지적사항 총괄³⁾

(단위 : 건, 천원, 명)

총건수	합 계		변상 (금액)	문책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17	6	46	0 (0)	0 (0)	2 (46)	2 (46)	0 (0)	0 (0)	10 (6)	0	0	5	0 (0)

3) 현지 조치사항 총 18건 제외(시정 7건, 주의 11건)

총평

- 이번 감사는 노인복지시설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채용 절차를 확립하고 지도·감독기관(부서)의 책무성을 함양하여 노인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노인복지시설 중 2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을 2020.10.26.부터 11.27.까지 실시
- 감사결과 보조금 횡령, 시설의 불법운영 등과 같은 중대한 비위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음. 다만,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설 관리 미흡, 후원금 집행 부적정, 공개채용 원칙을 위반한 종사자 채용 등 인사 운영 부적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적정 사례가 총 17건 확인되었음.
- 채용 및 인사관리분야에서는
 - 종사자를 신규 용하면서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공고기간(15일)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서류심사 합격자를 내부직원 회의만으로 임의 선정
 - 경력직·신규 사회복지사를 각 1명 채용하는 공고 후 경력직 사회복지사를 2명 채용하거나, 공고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채용
 -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회의록 작성·관리를 소홀히 함.
 - 시간 외 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함에 있어 중복 산정하는 오류로 인해 수당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
- 예산·회계 및 물품 분야에서는
 - 사업비는 편성된 세출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해야 하나 과목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사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예산 전용 절차 없이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함.

-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불용결정할 경우 市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재물조사를 소홀히 함.

후원금관리 분야에서는

- 후원자의 취지에 맞게 후원금을 모집하여야 하나, 지정후원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비지정위주의 후원금 모금을 하고, 지정후원금은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시설에서 임의로 정한 ‘지정후원사업경비, 복지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비지정후원금처럼 관리
- 후원금 과다이월, 후원금 영수증 미발급, 후원금품 미사용에 따른 폐품 처리 등 후원금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계약 분야에서는

-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비교 견적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실적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시설운영 분야에서는

- 「건축법」에 따라 증축 등을 할 경우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 해당 부서의 증축 불가 통보에도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옥상을 무단으로 증축

지도감독 분야에서는

- 민간위탁 해지 시 협약서 등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받는 등의 정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면서 재공고 시에는 기한 외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배점 및 평가방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 처리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또는 업무처리

지침의 불확실성(미흡)에 따른 업무 소홀과 지도·감독 미흡에 기인하고 있음.

- 특히 주관 부서에서 매년 진행하는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담당자들이 사업에 대해 심도 깊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8. 민간위탁시설운영 및 관리실태

□ 감사배경 및 필요성

-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허술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된 사항에 대한 요구 대응 필요
- 민간위탁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효과성 향상에 기여

□ 감사추진 사항

- 감사대상 : A센터, B센터, C개발원
 - * 지도·감독부서 : 市 경제정책실(투자창업과), 여성가족정책실(여성정책담당관)
- 감사기간 : 2020. 6. 1. ~ 7. 17.(31일)
- 감사반원 : 감사3팀장 외 8명(공익감사단 2명)
- 감사범위 : 2017. 1. 1.부터 현재까지 관리·운영 업무 전반

□ 감사중점 사항

- 창업보육기업 모집, 선발, 지원 등 입주기업 운영·관리 적정성
- 창업보육 시설 운영·관리 적정성
- 조직·인사관리 적정성
- 민간위탁금 등(예산, 회계, 계약, 급여 등) 적정성
- 위·수탁 협약 이행 및 수탁기관 관리(지도, 감독 등) 적정성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총건수	합 계		변상 (금액)	문책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환수	감액	기타					
45	11	13,585	0 (0)	0 (0)	13 13,585	2 4,899	0 (0)	11 8,686	22 (11)	0	0	10	0 (0)

□ 총 평

- 창업기업 보육과 여성일자리 분야 등의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 3개소(A센터, B센터, C개발원) 및 市 주관부서(투자창업과, 여성정책담당관)의 공정한 입주기업 선발·지원, 투명한 위탁시설의 운영·관리, 市 감독부서의 올바른 지도·감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2020. 6. 1.부터 7. 17.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음.
- 감사결과 시설 지원예산 횡령, 불법 운영 등과 같은 중대한 비위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지적사항은 업무담당자의 관련 법령(규정) 혼동 또는 미숙지에 따른 업무소홀, 업무처리 매뉴얼(사무편람 등) 미흡 또는 부재, 감독부서의 지도·점검 미흡 또는 소홀 등에 그 원인이 있었음.
-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창업기업의 보육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위탁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 모집·선발·지원·관리, 창업보육 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 외에도 센터의 전담인력 미 운영, 채용, 용역계약,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등 부적정 사례 총 45건이 확인되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입주기업 운영·관리 분야에서는**
 - (B센터) 입주기업에게 비용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되나 입주기업과 '발전기금'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당 2,125~10,000천 원을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취하여 '17년부터 '20년 기간 동안 19개 기업에게 총 132,125천원을 불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음.

- (B센터) 입주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금(인건비 등)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조사 등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업화 지원금(17,700천 원)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해당 건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후 市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최대 3년)을 하지 않는 등 입주기업 인건비 부정수령에 대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 (B센터) 입주기업 모집·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내부방침을 통하여 공개모집하지 않고 기존의 예비기업과 입주계약을 부적절하게 체결하였고, (A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입주면적별(A~D형)로 공개모집하여 선발하였으나 선발(D형)한 이후 기존의 입주기업의 확장이전으로 입주면적 A형에 공실이 발생하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지 않고 D형에 선발된 기업의 요청에 의해 입주면적을 부적절하게 축소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센터) 입주기업을 선발 시 부당하게 차별행위를 하면 안 되나 민간투자기관 및 재단 투자지원팀의 추천모집으로 변경하여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하였고 입주기업을 총 30개 내외로 선발하면서 공개모집 선발방식의 심사과정과는 다르게 추천모집에는 평가과정을 축소하여 상대적으로 센터를 입주할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였음.

시설 운영·관리 분야에서는

- (市 투자창업과)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 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나 추가 위탁 방침도 없이 새로운 위탁사업을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여 운영하였으며, 출연기관에 사무위탁 시 업무수행능력,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 존재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민간위탁시설에 추가로 업무를 부적절하게 재위탁 하였음.

- (B센터) 임대료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의 임대차계약서는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임대료를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으면 안 되나 별도의 서면특약 없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6,296천 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법인세에 대해 원천징수 하지 않으나 수탁기관에서 관련 계좌를 개설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제외 신청을 하지 않아 (B센터, C개발원) 민간위탁금 및 (A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市에 반납하여야 할 이자소득을 과소 반납하였음.
- (C개발원) 직원의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 임시보관 하는 예수금 통장은 원천징수액 납부 후에는 잔고가 0원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통장 잔액 14,054천원이 예치되어 있었고 신용카드 인센티브(포인트 등)는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 관리·운영 하는 것이 원칙이나 26개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103,824원(소멸포인트 제외)을 市에 세입조치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음.
- 또한, (A센터) 물품관리에 있어서도 취득물품을 미등재하거나 변경사항을 기록·관리 하지 않았고 500만 원 이상 물품을 市의 불용결정 없이 처리하였으며 사용가능한 물품은 불용처리 할 수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처리하였음.

□ 조직 · 인사 등 분야에서는

- (B센터) 수탁사업 인건비 산정 시에는 실제 투입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 하지 않고 예산총액을 맞추기 위하여 참여인원의 참여율 등을 조정하였고 특히, 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 시, 市 사업비로 지급 되는 인건비 비율만큼 보험료를 산출·집행하여야 함에도 집행비율을

초과 지출하여 총 1,149천원의 보험료를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음.

- (A센터) 수탁사업비 전액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전담인력을 재단의 고유사무를 중복 수행하게 하여 수탁사업 효율성과 능률성을 저하시켰고 수탁사무와 무관한 재단의 고유사무를 수행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 3,750천 원을 수탁사업비로 지급하였음.
- (B센터) 수탁사업의 수행 인력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으로 채용하면서 1차 서류심사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지원자를 임의로 탈락시켜 공정성을 위배하였고 내부구성원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정직의 정규직 전환, 승진 등의 인사주요사항을 결정하여 객관성, 공정성을 위반하였음.

계약 분야에서는

- (C개발원) 연구용역을 용역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연구인력 보유유무, 연구수행 가능한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엄선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연구 인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무런 방침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과 금액이 바뀌는 주요한 사항의 경우에도 계약이행보증서를 새롭게 제출받지 않는 등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 (A센터) ‘관’ 간의 전용을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하였고 ‘인건비’ 등을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잘못 전용하였으며 특히, 계약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인 ‘퇴직급여’, ‘사회보험부담’, ‘기타복리후생비’, ‘공공요금및제세’ 항목으로 전용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A센터, B센터, C개발원) 수탁사무에 따른 사업비의 세출예산을 편성·집행 할 때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적정한 과목의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하나 잘못 편성·집행하였고 또한, (C개발원) 퇴직직원에 대한 조의금 등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아님에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고 업무

추진비와 관서업무비 등을 사업별로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었음.

- 그리고 (A센터, C개발원) 수탁사업비의 예산을 수탁사무와 무관한 재단의 운영사무에 사용하여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음.
- (市 투자창업과, 여성정책담당관) 市 주관부서에서는 위와 같은 민간위탁 시설의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승인 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연도별 지도·점검 시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지 않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 분야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기타 창업보육센터 운영·관리분야에서는

- (市 투자창업과) 市 주관부서에서 유사한 성격의 창업기업의 보육센터 (A센터, B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면서 보육센터의 입주기업 모집 및 선발절차, 입주기업 점검 및 평가, 심사수당 지급 기준, 입주기업 사업지원금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상이하였음.

- 이번 감사결과와 지적사항을 계기로 ‘기업의 창업보육 활성화’, ‘여성 일자리 안정적 운영’ 등 우리 시의 주요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 보육센터(A센터, B센터), C개발원에서는 수탁 기관 스스로도 문제점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市 주관부서(투자창업과, 여성정책담당관)에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임.

9. 출연기관 주요사업 추진실태

□ 감사배경 및 목적

- 우리시 출연기관의 주요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찾아 시정 개선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및 사회공익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내용

- 감사대상: 총 4개 기관
 -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
- 감사기간: 2020. 6. 17.(수) ~ 2020. 7. 17.(금)
- 감사인원: 공공감사1팀장 등 11명
 - 공익감사단 4명(회계사 2, 노무사 1, 복지사 1), ※외부전문가 1명(문화예술) 별도
- 감사범위: '17. 1. 1.부터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실태

□ 감사중점

-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 추진 여부 점검
- 기관 주요 현안사업, 언론 비판 보도 사항 등 내·외부 이슈
- 市 수탁사업 추진 시 인력, 재산관리 등 예산 낭비요인 발생여부 점검
- 불필요한 위탁, 보여주기식 실적쌓기 사업 추진실태 등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총건수 ⁴⁾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기관 경고	기관장 경고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2	7	0	0 (0)	0 (0)	1 (0)	0 (0)	0 (0)	1 (0)	3 (7)	0 0	0 0	6	1	1

4) 현지조치 10건은 총 건수에서 제외

□ 총 평

- 이번 감사는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의 주요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찾아 시정 개선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및 사회공익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2020. 6. 17.부터 7. 17.까지 실시하였음.
- 감사결과, 교향악단 단원의 임금, 성과급 등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단원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
-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측면이 문제되어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서울시복지재단)
- 2002년 설립된 상암 DMC홍보관이 1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DMC 홍보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음 (서울산업진흥원)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감기관 및 서울시 주관부서와 소통 및 감사 사례 교육을 통하여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10. 공영주차장·차고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 감사배경 및 목적

- 주차장 및 차고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위탁관리 적정성, 시민 불편사항 등 전반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내용

- 감사대상 : 도시교통실(◇◇계획과), 서울시설공단(△△시설운영처)
- 감사기간 : 2020. 10. 14. ~ 11. 27.(기간 중 28일)
- 감사인원 : 안전감사4팀장 외 4명
- 감사범위 : 2016.1.1.이후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위탁(민간, 상인회)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 확인
- 차고지 유지관리 실태 확인(안전, 환경오염 등)
- 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관리사업 설계·시공·감리 등 품질관리 확인

□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 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21	26	3,192	-	-	1	1	-	-	10	1	-	9	-	-
			(-)	-	(3,192)	3,192	(-)	(-)	(26)	-	-	-	(-)	(-)

□ 총 평

- 이번 감사는 서울시에서 관리중인 주차장 및 차고지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2020. 11. 27.까지 위탁운영 관리 적정성 및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 감사 결과, 주차장 및 차고지 시설물은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중에 있었음.
다만, 일부 담당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인 업무 답습 및 태만 등으로 민간 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은 관리수탁자들의 수입금 축소 및 노동 관계법령 위반 등 계약내용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였고, 지갑없는 주차장 활성화 대책 미흡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미이행, 차고지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었음.
-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주의 요구 등 신분상 조치하였음.
- 현재 2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11건의 행정상 조치사항이 완료(21건 중 11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조치 진행 중에 있음('21. 6월 기준)